

# 제1편

## 총론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와 총괄평가

제1장\_ 문화예술환경의 변화와 전망

제2장\_ 2005년 사업의 총괄적 평가



## 제1장 문화예술환경의 변화와 전망

2005년의 문화정책 결산은 1년간 진행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넘어 참여정부가 2003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문화정책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5년에 추진된 대부분의 정책 사업들은 참여정부 초창기에 기획되고 진행되어왔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2005년에 벌여졌던 각종 문화예술 정책의 중요한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몇 년간 치열하게 진행되었던 문화다양성 운동이 ‘문화다양성협약’의 유네스코 총회 통과로 성과를 보았다는 것이다. 둘째,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예술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문예진흥원의 위원회’로의 전환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문화예술교육’은 관련기구 출범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술은행, 문학회생프로그램 등 기초예술 집중 지원제도가 새롭게 진행되었다.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여러 차원에서 제기되었지만 2004년부터 추진되어 2005년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되리라고 예상되었던 ‘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한 논의는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밖에도 문화헌장 제정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됐으며,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광주문화중심도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와 같이 우리 문화예술계와 정부의 문화정책은 지난해 어떠한 함수를 뚫어왔는지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난해 우리 문화예술환경의 변화와 전망을 재단의 위상과 유기적이고도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살펴보자.

### 제1절. 문화기본권의 진전

2005년은 문화다양성 운동의 전기가 마련된 해였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이 2005년 10월 20일 유네스코 총회에서 총 154개국 중 148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는 그만큼 미국주도의 세계화와 문화개방 압력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 협약은 문화의 획일주의를 저지하고 각 국가가 자국 문화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내용이 핵심을 이룬다. 이는 1970년대 이후 근대화론에 입각해 문화의 우열을 인정하면서 약문화는 강문화에 흡수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둔 '동화주의'에 대한 성찰과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 내에 복수의 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며, 그렇게 복수로 공존하는 문화는 우열에 의해 열등한 것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책적으로 열등하고 소수적인 위치에서 있는 문화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문화주의가 단지 문화적 이상론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문화 주의는 정치통합, 국민통합, 사회통합 같은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 유형의 하나가 문화다양성을 지향하는 '다문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 정책은 언어교육정책, 다매체정책, 법률과 규정의 개혁, 각종 권리에 대한 기회의 평등, 차별과 역차별의 해소 등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전반에서의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다. 즉 다양한 문화를 다수와 소수민족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예술인 '문화다양성협약'  
채택 환영 기자회견

다문화주의가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들에서 논의되고 수용되어 오다가 오늘날처럼 범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게 된 것은 90년대를 거치면서 심화된 세계화 현상과 관련이 깊다. 자본의 논리를 중심으로 한 WTO체계의 세계화에서 문화도 화폐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전락했다. 문화 역시 엄격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그리고 그 가격에 상품생산자의 임금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상품성을 부정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문화는 그 내용적 측면에서 보자면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문화상품의 특수성은 사용가치가 소통에 있다는 점이다. 문화상품을 소비하는 과정 즉 보고, 듣고, 읽고, 느끼는 과정에서 구매자는 그것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소통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부단히 (재)사회화된다. 문화상품의 공공성은 바로 이러한 해당 사회의 의미체계 혹은 가치체계의 재생산을 통해 사회 통합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구매자는 동시대인과 가치를 공유하고, 의미의 소통을 경험하고, 자기정체성 나아가 집단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런 점에서 문화는 상품의 형태로 화폐를 통해 매개됨에도 불구하고 결코 경제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자기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무한경쟁과 효율성을 앞세운 경제의 세계화는 모든 것을 상업적 척도와 ‘경영학적 마인드’를 통해 재단하였고, 그로 인해 문화영역은 급격히 시장화되고 이 과정에서 문화영역은 주변화, 파편화되면서 오히려 세계화의 ‘패자’ 그룹에 편성되기를 강요받았다. 아울러 세계화의 충격으로 인해 고유한 문화영역, 즉 완전 상업화가 될 수 없는 그 영역이 공공영역에서 위협받는 현상을 목격하게 됐다.

총 35개의 조문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6조, ‘당사국의 국내적 권리’에 따르면, “당사국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수단을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의거 각 당사국은 각종의 필요한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에는 스크린쿼터, 방송쿼터를 비롯한 일련의 조치 및 이를 위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법적인 권리가 포함된다. 둘째 7조, 국가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소수자나 토착민 등을 포함 다양한 사회집단에게 문화적 표현, 상품, 서비스 접근권의 보장 의무를 진다. 셋째 11조, 시민사회의 참여를 정의하고 있다. 문화NGO의 입장에서 대단히 바람직하지만 그 구체적 방안이 적시되지 않는 한 선언적 한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넷째 12조에서 14조, 당사국의 국제적 ‘의무’ 규정에서 그 중 ‘공동제작 및 배급 지원’은 특히 영화 및 시청각 분야에서의 공동제작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예를 들어 한·불 공동제작 영화의 경우 국내산 영화와 동등한 대우를 해줄 의무가 발생한다. 다섯째 19조, 협약은 이러한 문화 다양성 보호증진을 위한 ‘문화다양성 국제기금’을 설립할 것을 정하고 있다. 여섯째 25조,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다. 적잖은 논란이 있었는데 문화영역에서의 국제 분쟁 시 협상, 알선(good offices), 중개(mediation) 그리고 조정(conciliation)과 같은 순차적 방법을 제시하고 조정에 관해서는 부속서에 그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문화다양성협약은 다른 무엇보다 이러한 WTO체제하 국제정치경제질서에서 국제문화관계를

규율할 그 어떤 실효성 있는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국제규범과 기구가 부재하다는 현실에서 그 존재의의가 발견된다. 그렇게 본다면 문화다양성 협약은 이러한 국제규범의 불비와 진공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진일보한 시도이다.

그러나 총 35개 조항으로 구성된 문화 다양성 협약은 어느 곳에서도 문화산업 보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협약이 목표로 하는 것은 문화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가 아니다. 그 보다는 문화의 다양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창의성의 근원이 몇몇 상업성을 앞세운 문화상품의 범세계적 범람으로 인해 다양성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 다양성의 근원인 창의성의 토대가 붕괴되는 것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문화상품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산업 영역에서의 갈등이 첨예할 것이며 또 현실적인 이해상관으로 인하여 정책적으로도 이 분야에 집중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되고 또 주목해야 할 것은 문화다양성 협약의 근본정신과 목표는 창의성의 근원이 되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속문화, 민속문화, 그리고 각 민족과 국가의 개별문화가 동등하게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화 다양성 협약에 대응하는 올바른 문화정책은 이렇게 이 협약의 목표와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문화다양성협약의 통과를 지금까지 국내에서 스크린쿼터 운동으로 알려졌던 문화다양성 운동이 제대로 알려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특히, 문화다양성협약은 자국의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어 향후 협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국내 예술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다양성협약은 2006년에 국회비준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정부(외교부)의 눈치 보기가 없지는 않겠지만,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협약 비준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 비준에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한편,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문화현장제정위원회’의 활동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아직 문화현장이 제정·발표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문화현장이 이후 문화기본법의 근거가 될 상징적인 것이어서 그 중요성은 더 높다 하겠다. 문화관광부와 제정위원회는 2005년 10월 ‘문화의 날’에 맞추어 현장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세부내용에 대해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제정위원회가 시간을 더 얻어둔 상황이다. 문화현장과 함께 문화권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으나 아직까지 ‘사회적 기본권리로서의 문화권’에 대한 논의가 빈약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 제2절. 문화예술지원체제의 민간화

최근에 예술의 위기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각종 통계조사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여가시간이 증대되고 있다고 하는데도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는 정체 또는 감소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문화재정과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저하가 현실로 다가와 있다. 실제 2005년 문화예산은 지방이양예산을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2004년도에 비해 6%가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문화예산비율도 1.21%에서 1.06%로 감소되었다. 이대로 지속된다면 문화국가의 중요한 척도라고 여겨졌던 문화예산 1%의 붕괴도 곧 현실화될 것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주지하듯 지난해 기대와 우려의 교차 속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지난 30여 년간 관 중심의 독임제 체제로 운영되어온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을 민간중심의 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핵심내용으로 한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문예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2004년 12월 29일에 통과되었고, 2005년 1월 27일 법률이 공포되었다. 2005년 6월 13일 개정된 문예진흥법에 따라 예술위원회의 위원회 및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절차 및 방법 등을 담은 세부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그 후 2005년 8월 10일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분야에서 각 1명씩, 문화일반에서 5명으로 총 11명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 설립위원을 정식 위촉했다. 그리고 마침내 2005년 9월 29일, 한국 최초의 민간 주도 예술지원기구인 예술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그 시작을 알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식

표 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관련된 “문화예술진흥법” 주요 개정내용

분류	주요 내용
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원 위촉</li> <li>○ 위원추천위원회는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의 인사가 균형 있게 포함되어야 함</li> <li>○ 위원회 구성 및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li> </ul>
위원회 조직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원 장: 위원회에서 호선, 3년 임기, 상임</li> <li>○ 위 원: 3년 임기, 1회 연임가능, 비상임, 위원 결원시 새 위원은 임기 위촉일부터 3년 임기</li> <li>○ 감 사: 장관 임명, 3년 임기, 상임</li> <li>○ 사무처장: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 임명, 3년 임기</li> </ul>
위원회 의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소집: 위원장 소집</li> <li>○ 의결 정족수: 재적위원 3분의 2출석, 과반수 찬성</li> <li>○ 제척사항: 민법 제777조에 의해 친족관계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은 심의의결에 참여 불가</li> </ul>
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성. 소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li> </ul>
기금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문화예술교류 및 국제문화교류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법적 근거 마련</li> </ul>
위원회의 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 변경,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 규정</li> </ul>
지역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문예진흥시책에 대한 심의 및 지원기구로서 지방문화예술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li> <li>○ 지방문예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원기구로서 재단법인 설립 근거 규정</li> <li>○ 위원회, 지방위원회, 재단법인은 상호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li> </ul>

표 1-2 제1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구성

분류(장르)	위원회	경력사항	비고
계	11명		
문 학	김 병 익	문학과지성사 상임고문	위원장
미 술	김 정 헌	공주대 교수	
음 악	정 완 규	중앙대 음대 교수	
연 극	심 재 찬	극단 전망 대표	사무처장
무 용	김 현 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전통예술	한 명 희	전 국립국악원장	
문화일반	강 준 혁	성공회대 문화대학원장	
	김 언 호	한길사 대표	
	박 종 관	충북 민예총 사무처장	
	박 신 의	경희대 대학원 교수	
	전 효 관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대표	

다. 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문학평론가 김병익 씨가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초대 사무처장으로는 연극연출가 심재찬 씨가 임명되었다.

진흥원의 민간기구화는 문화예술계가 여러 경로를 통해 요구해왔던 사항으로, 가장 큰 핵심은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양한 현장 전문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전체 위원회 및 주제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발맞추고, 보다 폭넓은 공공성이 관철되는 문화예술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또한 민간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최근의 행정시스템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문화예술 행정의 특성상, 그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도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설득력을 얻었다.

예술위원회의 출범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그 동안 방치되었던 기초예술의 생태계를 회생시키기 위한 예술계와 정부의 공동 노력 속에서 얻어진 조직적 성과물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상징적 의미로서 정부가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결정권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관하였다는 것이다. 문화예술의 중요성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시대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계에 위기가 닥친 원인이 문화예술계나 시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부문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배경에는 현장의 수요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반영되지 못했다는



표 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관련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주요 내용

분류	주요 내용
위원추천 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20인~25인)</li> <li>○ 추천위원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분야에서 10년 이상 창작활동에 종사한 자</li> <li>• 문화예술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기획 및 행정에 종사한 자</li> <li>• 문화예술 분야의 관련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li> <li>• 법조계·교육계·언론계·경제계 등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자 중 문화예술에 대한 식견이 있는 자</li> </ul> </li> <li>※ 제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등 분야별 각 2인 이상</li> <li>•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재정, 지역문화, 다원예술 등에 관련된 인사 5인 이상 포함</li> <li>• 추천위원 중에는 특정 단체 소속이 1/3을 초과해서는 안됨</li> <li>• 추천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은 30%이상이어야 함</li> <li>• 과거 3년간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였던 자는 배제</li> </ul> </li> </ul>
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추천위원회에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후보자 복수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보자 추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 및 정책적 이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li> <li>-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등 각 예술분야와 문화일반, 문화 예술행정 및 경영·재정, 문화복지·향수, 지역문화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각 분야의 인사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li> <li>- 남·여 및 각 연령층이 적절히 안배를 이루도록 할 것</li> </ul> </li> <li>• 위원 자격 요건 : 위원추천위원회 자격요건과 동일</li> </ul> </li> <li>○ 문화관광부장관은 복수 후보자 중 최종 11명 선정</li> </ul>

반성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정부조직이나 기존의 문예진흥원 같은 조직은 효율성을 중시하거나, 가치판단을 꺼려하고, 형평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에 자율적인 예술위원회에서는 합의과정을 통하여 그러한 전략적 지원이 가능하며, 그러한 결정에 대해 보다 많은 이들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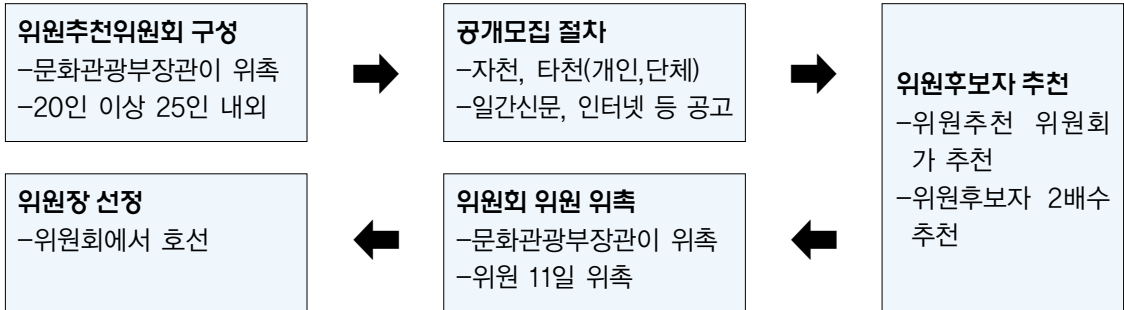


그림 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회 구성절차

더불어 예술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독자성과 고유성을 지향하며 기초예술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이 되었다는 점이다. 예술위원회가 독자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은 과거 독임제에서 현장 예술가들로 구성된 민간중심의 합의 체제로 전환되었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 전담이 소속 부처인 문화관광부로부터 결정된 사업과 예산을 넘겨받아 단순히 집행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지원정책과 사업을 전담한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조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술위원회가 고유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은 기초예술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사업을 다른 어떤 부서나 기구들과도 분담하지 않고 전담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한다. 예술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현재의 법률적, 정부조직체계 상의 위상과 관계없이 여타 기구들과 달리 국가 기초예술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고유한 역할을 지니게 되었다.

초미에 관심에 대상이 된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출범 이후 예술위원회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남북 및 국제문화교류’, ‘지역문화’ 등 9개 분야에 걸쳐 88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소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 방향 제안 및 위원회의 지원정책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제시, 지원정책 개발 및 지원심의 방향 제안, 위원회가 위임한 분야 또는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심의, 위원장이 요청한 사업의 집행에 대한 자문, 기타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평가 등의 임무가 부여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향후 위원회의 비전 및 세부적인 사업추진방향에 관한 틀을 만들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진흥원의 사업 구조와는 차별화된 위원회의 정체성과 사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1기 위원회의 가장 시급한 목표이다.

또한, 예술위원회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와 사무처 간에 연계기능이

활성화되어 예술현장을 대표하는 소위원회와 행정기능을 대표하는 사무처가 원활할 소통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무처는 정책보조기능을 강화하여 예술진흥정책 결정에 참고가 되는 정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러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확정된 정책 방향 및 방침들이 소위원회에서 구체화되도록 하며,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각종 결정이 충분한 사전 연구, 자료조사, 평가·검토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금까지 문예정책에서 예술의 생산자들인 예술가들이 중심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예술위원회는 이러한 자신의 출범 배경으로부터, 지금까지 예술정책의 대상이 되었던 예술가들을 예술정책의 주체로 세우고, 그들이 가진 전문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기초예술의 회생을 위한 새롭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위원회의 주체를 교체하고 과거에 문예진흥원이 해오던 지원사업의 절차와 규모를 변경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예술행정에 대해 최상의 인식수준을 담고 있다고 평가되는 참여정부의 2004년 성과물인 21세기의 문화비전인 「창의한국」과 함께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새 예술정책」을 사문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새롭게 구축된 위원회의 역량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임명직 독임제 체제에서는 매우 어려웠던 대정부 설득작업 과정에서 예술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보여준 1기 위원회는, 그 활동기간이 극히 부족한 까닭에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소위원회 구성 과정 등에서 드러난 기존 장르예술 편향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각의 적잖은 우려를 낳기도 했다. 예술위원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예술현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흥원의 틀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야하며 현재의 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이 안고 있는 경직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보다 예술현장으로 다가서는 다각적인 지원심의구조를 만들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중단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점 역시 쉽사리 풀리지 않을 과제로 주어져 있다. ‘위원회 구조로의 전환’이라는 문화예술지원의 급격한 변화의 윤곽은 1기 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될 2006년 이후에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제3절. 문화예술교육지원의 본격화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역사에서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문화에

술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2004년 6월 8일 문화관광부가 1년여의 기간 동안 준비하여 발표된 중장기 문화비전서인 「창의한국 : 21세기 새로운 문화비전」과 2008년까지의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인 「예술의 힘」에는 ‘학교교육과 예술의 네트워크 구축’,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교육체계 구축’, ‘교육 전문인력 풀 구성’ 등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이 중요한 요소로 담겨있다. 이를 위하여 문화관광부는 2004년 11월에 「문화예술교육과」를 신설하였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2005년 2월에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설립하였고, 드디어 2005년 12월 8일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상정된 지 1년만의 일이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 2년 반만의 일이다.

지난 2003년부터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문화예술교육진흥법’ 논의는 같은 해 7월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의 공동 제안으로 확대되면서 구체적인 시행안 마련을 위한 공동기획단이 구성되었다. 이후 관련 실태조사, 의견수렴, 분야별 소위의 구성·운영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법안 마련을 위한 사전 작업이 들어갔다. 그러나 2005년 들어 법안 명칭이 행정 체계상의 이유 등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으로 변경되고 법안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이 법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시민·문화 단체들과 예술계는 법안의 제정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특히 법안의 제정 과정에서 문화관광부가 자문회의나 공청회 등을 거치기는 했으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해 ‘7차 교육과정’으로 대변되는 공교육 구조가 안고 있는 기능주의적 편향을 극복할 만한 내용을 안고 있지 못하다는 점, ‘교육사’ 자격증 제도의 도입은 첨예한 문제로 논란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2004년 12월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은 2차례 임시 국회에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관련 전문가의 의견진술까지 이뤄졌고, 2005년 9월 정기국회에서는 상임위 공청회도 진행되었으나, 문화예술교육인력제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연내에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결국 논란이 되어왔던 ‘문화예술전문인력’ 부분 중 ‘자격제도’에 대한 내용 등이 삭제되어 통과되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주요 내용으로 제1장은 총칙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을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사회’ 문화예술교육으로 세분하고 ‘문화예술교육시설’과 ‘문화예술교육단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시켰다. 특히, ‘문화예술전문인력’의 개념을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로 정하였다.

표 1-4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주요내용

분류	주요 내용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교육 :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li> <li>○ ‘문화예술교육시설’과 ‘문화예술교육단체’의 범주를 대통령령에 위임</li> <li>○ 문화예술전문인력 :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li> <li>○ 문화예술교육 기본권 명시</li> </ul>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 시책 마련 의무화</li> <li>○ <b>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b> 설치 (심의기구-강행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무 :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 조정, 예산 심의</li> <li>• 심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방향,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지원업무 협력·조정 등</li> </ul> </li> <li>• 위원회 구성 : 사계 추천 전문가 중 문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인적자원 개발회의의 의장(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임명(20인 이내)</li> <li>• 위원장 : 인적자원개발회의 의장이 문광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중 임명</li> </ul> </li> <li>○ <b>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b> 설치 (협의·조정기구-강행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무 : 지역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중앙-지방-교육청 시책 및 협력·역할 분담, 조정,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li> <li>• 위원회 구성(임기 :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부위원장 (부교육감) 포함 20인 이내</li> </ul> </li> <li>•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li> </ul> </li> <li>○ <b>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b> 설립(별도 재단법인-강행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격 : 재단법인</li> <li>• 임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교육시설 및 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평가, 학술 연구 및 조사</li> <li>- 교원 연수 지원,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li> <li>-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및 관리,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li> </ul> </li> </ul> </li> </ul>

분류	주요 내용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임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역문화교육지원센터 지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 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업무의 준함</li> <li>• 지정요건 : 대통령령으로 정함</li> <li>• 지원내용 :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국가, 지방자치단체)</li> </ul> </li> </ul>
학교·사회 문화예술 교육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근거를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교육시설의 지원, 교원 연수기회 제공, 학교·사회문화예술 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보조</li> <li>• 국·공립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및 교육프로그램을 갖추도록 의무화</li> </ul> </li> </ul>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교육기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흥원, 지역 센터,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시 전문기관 지정</li> <li>•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교육과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li> </ul> </li> <li>○ <b>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배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문화의집 등의 교육시설은 시행령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기초교육 16시간+전문교육 44시간)을 수료한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li> <l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필요 인건비를 보조</li> </ul> </li> </ul>
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b>’ 지정 및 국·공립 교육시설의 ‘<b>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b>’의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li> </ul>

제2장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열거하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공공기관 간 협조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지역별 시행을 맡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시·도에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기관으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지역기관으로 진흥원의 업무에 준하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3장과 제4장은 학교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근거를 명시하여 민간교육시설의 지원, 교원 연수기회 제공, 학교·사회문화예술 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공립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및 교육프로그램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제5장은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및 지역센터,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을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문화의집 등의 교육시설은 시행령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기초 교육 16시간+전문교육 44시간)을 수료한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필요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게 하였다.

부칙에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국·공립 교육시설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되어 진행된 정책 시행과 논의구조의 문제점은 문화예술계의 인력수급 문제와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확대에 치우친 나머지 정작 근본적인 변화의 대상인 교육과정과 교육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는 소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전히 교육부는 차기 교육과정을 논의하면서 ‘음악’, ‘미술’ 등의 예술교과를 선택 교과화하여 교육과정에서 소외시키려 하고 있으며 대입 주지교과 중심의 현 교과과정을 자율적인 문화교육의 교과과정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문화관광부 역시 교육과정의 문제에는 소홀하여 문화예술교육정책을 ‘교육’을 위한 정책이 아닌 ‘문화예술계’를 위한 정책으로



기전문화대학 장애/비장애 통합예술교육 ‘푸른 고래의 꿈’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안) 공청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통과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역시 이와 같은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 법률은 문화예술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제반의 조항들을 담고 있으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등 주요 조항에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역할, 교육계 및 예술계에 미칠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하여 현장 및 강단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문화예술계는 염원하던 법안인 만큼 ‘환영’ 하는 분위기다. 지원법 통과와 지연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들이 정체되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지원사업들의 진행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2년 반을 끌어온 법안인 만큼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들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함께 지원 구조 마련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작동되는가도 관건이다. 법만 있고,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는 관행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 법의 시행을 통해 민간의 문화예술교육 집단과의 원활한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는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교육집단과의 교류와 협력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관광부도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법에 제시된 전문위원회와 지역문화예술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마다 다른 ‘지역센터’ 지정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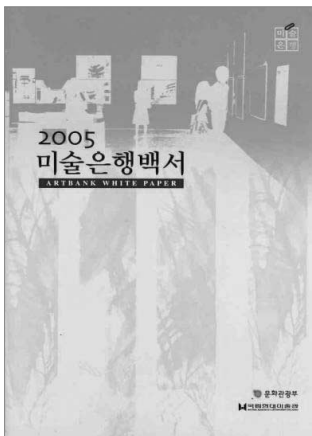


## 제4절 기초예술 집중지원 확대

### 1. 미술은행(Art Bank) 제도

2005년 정부가 추진한 기초예술 집중지원 중 미술과 관련된 정책은 미술은행 제도, 공공미술 제도, 사립미술관 지원, 기업의 미술품 구입 시 세금감면 등이었다. 특히 참여정부의 「새 예술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미술은행(Art Bank)제도는 기존의 미술정책과는 차별화된 목표와 운영방식으로, 정부예산으로 작품을 구입하여 신진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이 작품들은 정부기관과 지자체, 기업에 대여함으로써 미술대중화를 꾀하겠다는 정책으로 2005년 3월부터 문화관광부에서 설립하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관이 되어 운영되었다. 이미 영국(British Council Collection), 프랑스(Fnac), 독일(IFA) 및 호주(Artbank), 캐나다(Canada Council Art Bank)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2006년 2월에 발간된 『2005 미술은행백서』에 따르면, 작품구입은 한국화, 서양화, 서예(문인화), 조각, 판화, 공예, 사진, 설치 및 뉴미디어아트 등 미술 전 장르에 추천제 2회, 공모제 1회, 현장구입제 4회를 거쳐 총 7회의 구입제를 통해 총 473점 21억 6,467만원의 작품을 구입하였다. 작가의 성별분포는 여성이 122명으로 26%, 남성은 351명으로 74%의 비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 16명으로 3%, 30대 148명으로 31%, 40대는 186명으로 39%, 50대 이상은 123명으로 26%의 분포를 보여 가장 왕성하고 발전 가능한 30대~40대의 비율이 70%를 차지하였다.



문화관광부 『2005 미술은행 백서』

미술은행의 가장 핵심적인 운영내용 중 하나인 작품 대여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시행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무총리비서실, 재정경제부 등 총 17개 기관에 233점이 대여되어 구입 작품 대비 약 50%대의 높은 대여가 이루어 졌으며 청사 건물을 미술문화 공간으로 꾸미는데 활용되고 있다.

미술은행 대여 부문별로는 서양화가 45%, 한국화가 28%로 대체로 높은 대여를 나타냈다. 반면 판화 9%, 조각, 뉴미디어 및 설치, 문인화, 순수사진, 순수공예가 3~4%, 서예의 경우 1%로 가장 낮은 대여를 보여 장르별 수요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은행 운영의 평가를 위해 실시한 작가(473명), 대여기관(12개 기관) 및 화랑(100개소)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작가 진흥정책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5%를 보였으며, 화랑의 설문분석 결과 73.3%가 작품의 구입과 대여가 국민의 문화향수 및 미술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나

표 1-5 2005년도 미술은행 작품구입 현황

(단위 : 점/천원)

구분 부문	1차 추천제		1차 현장구입제 (KIAF)		공모제		2차 추천제		2차 현장구입제 (MANIF)		3차 현장구입제 (SIPA)		4차 현장구입제 (화랑미술제)		계	
	품 수	금액	작품 수	금액	작품 수	금액	작품 수	금액	작품 수	금액	작품 수	금액	작품 수	금액	작품 수	금액
한국화	33	134,500	2	7,500	30	149,500	24	121,000	4	15,000	0	0	10	38,400	103	465,900
문인화	7	26,500	0	0	1	4,000	5	14,000	0	0	0	0	0	0	13	44,500
서예	8	21,100	0	0	1	3,000	9	30,000	0	0	0	0	0	0	18	54,100
서양화	47	257,600	24	103,300	43	237,500	29	161,000	8	22,000	0	0	19	103,900	170	885,300
판화	18	23,600	0	0	2	6,000	8	38,000	0	0	22	37,570	0	0	50	105,170
조각	22	102,500	2	8,000	13	66,000	10	59,500	0	0	0	0	0	0	47	236,000
뉴미디어	14	87,000	0	0	5	27,500	5	25,500	0	0	0	0	3	24,000	27	164,000
순수공예	14	59,000	2	7,000	4	14,000	5	16,000	0	0	0	0	2	6,700	27	102,700
순수사진	7	45,000	0	0	6	32,000	4	26,000	0	0	0	0	1	4,000	18	107,000
합계	170	756,800	30	125,800	105	539,500	99	491,000	12	37,000	22	37,570	35	177,000	473	2,164,670

표 1-6 2005년도 미술은행 작품대여 현황

(2005. 12. 31 현재)

구분 월	기관명	부문 별(점)									소 계
		한 화	문 화	서 예	서 양 화	판 화	조 각	뉴미디어 및 설치	순수 공예	순수 사진	
8월	재정경제부	1	0	0	2	0	0	0	0	0	3
	기획예산처	2	0	0	4	1	0	0	0	0	7
	외교통상부	0	0	0	1	0	0	0	0	0	1
	공정거래위원회	6	0	0	3	1	0	0	0	0	10
	해양수산부	0	0	0	3	0	0	0	0	0	3
9월	국무총리비서실	1	1	0	5	5	0	0	0	0	12
	재정경제부	0	0	0	3	0	0	0	0	0	3
	광주남구문화예술회관	12	1	1	9	5	1	1	2	1	33
	대통령 경호실	0	0	0	1	0	0	0	0	0	11
	대통령 비서실	3	1	0	6	0	1	0	0	0	11
	포천아시아미술제	0	0	0	0	0	0	1	0	0	1
	국방부	5	1	0	0	0	0	0	0	0	6
10월	뉴서울컨트리클럽	0	0	0	9	0	0	0	0	0	9
	과학기술부	7	0	0	5	0	0	0	0	0	12
	국방부	11	1	0	13	6	2	0	4	3	40
11월	건설교통부	3	0	0	9	0	0	0	0	0	12
	국립중앙박물관	4	0	0	1	0	1	2		1	9
	국방부	1	0	0	1	0	0	0	0	0	2
12월	삼진미술관	9	2	2	20	2	4	4	2	5	50
	통일교육원	0	0	0	8	0	0	0	0	0	8
합 계		65	7	3	103	20	9	8	8	10	233

타나, 미술은행 제도가 미술시장 및 작가에게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구입대상 작품 선정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고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신진작가가

아닌 기성작가, 장르와 지역, 학교별 안배 등을 고려한 소액 다건주의로 흘러 버려 당초 미술계의 기대에는 한참 벗어났다. 이는 미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탓이다. 아쉽지만 지속적인 미술작품 구입창구가 마련됐다는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이 제도가 충분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미술은행에서는 작년에 이어 2006년에도 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미술작품을 확대 구입하고 대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며, 지방문예회관 및 공·사립미술관 기획전시를 추진하여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문화향수기회를 확대 부여할 방침이고, 미술은행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시행 초기에는 미술품 수집의 경험과 수장고 등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였으나, 향후 2~3년 후에는 (재)'한국미술진흥재단'(가칭)을 설립하여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 2. '문학' 회생프로그램

2005년 3월 17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現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은 한국문학 각계의 의견을 모아 '문학회생프로그램추진위원회'(위원장 신경림)를 구성하여 '힘내라 한국문학'이라는 슬로건으로 '문학 회생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 i) 우수 문학도서 구입·배포 ii) 문예지 게재 우수 작품 원고료 지원 iii) 우수 문예지 구입·배포 등 세 가지 사업이다. 2005년 문화예술분야 복권기금사업(총 14개 사업 498억원 예산, 문예진흥원 추진 7개 사업 275억원) 중 52억 2천만원을 투입했다. 사업별로는 '우수 문학도서 구입·배포' 사업에 43억원, '문예지게재 우수작품 원고료 지원' 사업에 3억 2천만원, '우수 문예지 구입·배포' 사업에 6억원이 책정되었다.

'우수문학도서 보급' 사업은 분기별로 시, 소설, 기타(평론, 수필, 아동문학)로 나눠 장르 당 20~30종의 우수문학작품을 선정한 뒤 종당 2,000부를 구입해 공공도서관, 병영도서관, 교정시설, 기타 소외지역에 배포하는 사업이고, '우수문예지 구입배포' 사업은 기존 문예진흥원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1년에 한번 우수문예지를 선정해 공공도서관 등에 정기구독형태로 배포하는 사업이다. 이 역시 분기별로 전국에서 발행되는 문예지에 실린 시와 소설을 예심과 본심으로 나눠 심사해 분기당 시 100편, 소설 20편을 선정해 시는 편당 40만원, 소설은 편당 200만원을 작가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결과 지난 해 우수문학도서 총 287종 290권이 선정되어 공공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 소년원, 복지시설, 어린이도서관, 마을도서관, 청소년공부방 등 1000여개 처에 보급되었다.



제1회 '힘내라 한국문화' 축제 - 작가와의 대화

우수문학도서 보급사업의 홍보를 위한 부대행사로 '힘내라 한국문화 축제'를 전남 구례에서 열었고, 11회의 우수문학도서 작가와의 만남을 전국 각지에서 진행했다. 또한 우수문학도서 독서 감상문대회를 열어 진행하였다.

2005년 우수문예지로 지역문예지를 포함해 총 40종이 선정되어 400여 군데 공공도서관에 배포되었다. 문예지계재 우수작품 지원사업에서는 248명의 시 400편, 64명의 소설 80편이 선정되어 총 3억2천만원이 지원되었다.

그러나, 자칫 이런 식의 지원이 문학의 자생력을 더욱 악화시키지는 않을까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고, 문학의 '희생'을 '돈'과 등치시키는 사고방식과 조직편성의 균형감 등은 이후 문화예술위원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2006년에는 사업 명칭이 '문학나눔'으로 바뀐다. 이름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문학 향수층에 대한 배려가 훨씬 강조된다. 온 국민이 한국문학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일 수 있도록 홍보에 많은 역점을 둘 예정이다. 우수문학도서 보급사업과 우수문예지 구입배포사업을 보완해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기존에 진행해왔던 우수문학도서 독서 감상문대회도 대상을 문화예술위원장상으로 제정하는 등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작가와의 만남을 문학작품 낭독회 형식으로 더욱 다양하게 구성하고, 한국문학축제 역시 문학을 주제로 한 총체적인 예술축제로 기획하고 있다. 그밖에 독서 감상문 입상작과 우수문학도서를 활용한 책자발간 등 문학을 함께 나누고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2005년은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이기도 했다. ‘문화를 통한 발전’ 개념이 얼마나 광주와 광주를 넘어선 네트워크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갈등과는 별개로 문화도시가 시민들의 일상에 어떻게 스며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2005년 초부터 시작된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저작권법은 그동안 문화관광부가 수년 동안 준비해 온 전문개정이란 점에서 의미를 찾았으나 시민사회에서는 ‘지나치게 산업계의 이해만을 반영했다’며 크게 반발이 일어났다. 일부 친고죄의 비친고죄화는 물론, 사법 영역이 아닌 행정부 차원의 단속과 규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보호장치 의무화 등은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인터넷에서 저작물의 비영리적, 개인적 이용보장 조항, 국가 저작물의 자유이용보장 등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와는 크게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보편화된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을 것이란 불안감은 네티즌들을 자극해 온라인상의 전방위적인 반대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저작권법과 관련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며, 이는 2006년에도 큰 이슈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